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,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(법률 제19685호, 2023. 8. 16. 공포, 2025. 2. 17. 시행)됨에 따라, 구동축전지 기재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구동축전지 식별번호”란 구동축전지를 식별하기 위한 일련번호로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는 번호를 말한다.

제8조의2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⑩ 등록관청은 법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구동축전지(이하 “구동축전지”라 한다)를 2개 이상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등록원부에 등록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등록원부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란에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적어야 한다.

제22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
5.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 결함 시정조치 및 무상수리의 방법으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교환한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22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동차등록원부(갑)

총 면 중 제 면					
자동차등록번호		제원관리번호		말소등록일	
차 명				차 종	
차대번호		원동기형식		용 도	
구동축전지 식별번호					
모델연도		색 상		출처구분	
최초등록일		세부유형(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합니다)		제작연월일 최초 양도연월일	
최종소유자			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사용분거지 (차고지)				등록사항 확인일	
검사유효기간				폐쇄일	
순위번호		사 항 란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등록일	접수번호
주등록	부기등록				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
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2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2 (현행과 같음) 3. “구동축전지 식별번호”란 구동축전지를 식별하기 위한 일련번호로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는 번호를 말한다.
제8조의2(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) ① ~ ⑨ (생략) <u><신설></u>	제8조의2(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등록관청은 법 제2조제1호의 6에 따른 구동축전지(이하 “구동축전지”라 한다)를 2개 이상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등록원부에 등록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갑등록원부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란에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적어야 한다.
제22조(변경등록 신청) ① (생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 1. ~ 3. (생략)	제22조(변경등록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<u><신설></u>	4.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
<u><신설></u>	5.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 결함 시정조치 및 무상수리의 방법으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법 제33조 제3항제3호에 따라 교환한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	<u><삭제></u>
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⑤·⑥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46